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07356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정수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종인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종인

4.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종인

5. F

6. G

7. H

8. I

9. 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종인

10. K

11. L



12. M

소송대리인 N

변 론 종 결 2026. 8. 14.

판 결 선 고 2026.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저작물인 원고의 상품 상세페이지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함과 동시에 개별 사진들은 그 자체로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은 원고 허락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공중송신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허락 없이 자신들의 판매 페이지 제목, 상품 정보, 광고 등에 'O'라는 명칭을 무단 사용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피고들이 원고의 공식 판매처인 것처럼 오인, 혼동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들은 각자 또는 상호 공모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영리행



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저작물'이 무엇인지,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무엇인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원고인지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정리한 청구원인이 여러 개인 경우 그 병합관계를 밝히려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할만한 청구원인에 대하여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¹⁾,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3호증, 을마 제5, 6호증, 을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헤어 또는 바디 케어 제품을 구매하여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에서 각자의 상호와 대표자를 기재한 후 재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와 같은 피고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들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각 부정경쟁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도 않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21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